

# 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11. 12. 8. 규칙 제580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'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
2. 발전기금 기부자의 공적심사
3. 기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교학처장, 기획처장, 훈련처장, 사무국장, 재단법인 "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" 상임이사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내·외부 인사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간사위원은 기획처장이 된다.

**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와 임기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총장이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하며,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위원회 회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④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, 임명 또는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실무위원회)** 기금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기금 등의 관리와 종류)** ① 조성된 기금 또는 경비는 재단법인 “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” 회계로 편입한다.

② 기부자가 발전기금을 출연하거나 출연약정을 할 때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기관이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지원기관(대학원별, 학과, 부속기관, 육성종목 등)
2. 지원용도(학술연구비 지원사업, 장학금 지원사업, 도서관 지원사업, 훈련 및 연수 지원사업, 학술교류와 학술회의 지원사업, 훈련·연구 시설, 기자재 및 기타 물품 확충 지원사업)

**제8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580호, 2011. 12. 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